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 안 번호 403

발의년월일 : 2019년 02월 01일

발 의 자 : 장상기 의원(1명)

찬 성 자:이현찬, 성흠제, 봉양순,

김호평, 경만선, 권순선,

문장길, 김희걸, 이세열,

김용연, 이광호, 신정호,

김기덕, 우형찬 의원(14명)

1. 제안 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,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 사항 등 구체적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,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사항 등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축될 수 있음. 더욱이 행정재산의용도 변경및 폐지의 경우 상위법률에 따라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규칙에서 생략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.

2. 주요 골자

가.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함 (안 제4조의2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7항의 제목을 "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업무"에서 "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"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
 - 2.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이 5 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
 - 3.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
 - 4.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 - 5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·용도·위치가 변경된 경우(다만, 공 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)
 - 6.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
 - 7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 - 8.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1.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
 - 2. 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·처분
 - 3.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
 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<u>구성ㆍ</u>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<u>구성 및</u>
<u>운영 및 업무</u>)	<u>운영</u>)
①~⑥ (생 략)	①~⑥ (현행과 같음)
⑦ 심의회 운영ㆍ기능 및 그 밖에	⑦ 심의회 운영 등 그 밖에 심의
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	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로 정한다. 다만, 재산의 취득	한다. 〈단서 삭제〉
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「공	
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	
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7	
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	
130퍼센트 이상, 처분의 경우	
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	
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	
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	
〈신 설〉	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
	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심의한다.
	1. 공유재산의 취득・처분에 관한
	사항
	2.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
	가격(이하"기준가격"이라 한
	다)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
	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

매각가격의 사정

- 3.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
- 4.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- 5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 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되거나 사업목적·용도·위치 가 변경된 경우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)
- 6.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
- 7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- 8.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 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-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1.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- 2. 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 지의 취득·처분
- 3.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·처분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 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